

심 사 보 고 서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7
----------	-----

2021. 10.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62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59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

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710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86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일부(224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 기관별 출연 개요 >>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62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자치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지원 지원 필요	158,896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 인재양성 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71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법적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
- 각 기관별 관련 근거에 의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5개 기관 출연계획안은 적절히 제출되었음.

구 분	관 련 근 거	비고
충 북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나. 종합 검토의견

① 충북연구원

- 충북연구원은 충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함.
- 다만, 수탁과제 전입금 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인건비 상승 등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단순히 출연금 증액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16	17.3	20	27.5	27.5	79.4	36.5	44	44	44.5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광역 시·도 지방분권 정책 지원 등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지방간 상생 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필요하나,
-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6개 시·도가 동일하게 각 25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21년도 출연계획안 심의 시에도 개선토록 요구된 바 있음.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100	200	150	200	200	250	250	250

<연구과제 수행 현황>

연도별	정책연구과제
2021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방안 연구
2018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7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2016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지원시설 구축 방안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한 기관으로
- 시·도별 재정력 지수(50%)와 평가대상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음.

<출연금액 산출>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A+B)	분담 비율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충청북도	60	5.95%	0.517	2	30	19	2	30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공기업수(공사·공단, 시군상하수도)

<시·도별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1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08	△6	9.594	-	510	370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7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60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4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23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394	1	24	28	3	36
충청북도	60	60	-	0.517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87	2	30	32	3	36
전라북도	54	54	-	0.37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38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489	1	24	38	4	42
경상남도	72	72	-	0.70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 임직원에게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60	60	60	60	60	60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충북도 출연금 배분 내역>

(단위: 천원)

자치단체명	① '20년 결산 지방세	②'20년 결산 보통세	'22년 출연금 (②*1.2/10000)
충북도 소계	2,770,500,808	2,538,609,600	304,634
충북도 본청	1,556,005,652	1,324,131,537	158,896
청주시	592,650,926	592,637,956	71,117
충주시	149,342,752	149,340,171	17,921
제천시	83,158,723	83,158,723	9,979
보은군	26,565,373	26,565,284	3,188
옥천군	36,612,757	36,612,650	4,394
영동군	28,178,978	28,178,888	3,381
증평군	27,234,085	27,234,068	3,268
진천군	101,791,327	101,790,088	12,215
괴산군	26,281,844	26,281,844	3,154
음성군	118,435,006	118,435,006	14,212
단양군	24,243,385	24,243,385	2,909

5]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각종 장학금 사업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단운영 예산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46,732	5,000	5,000	5,0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620	694	657	650	686

<기금 현황 2021.9.30.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수 입								지 출 (사업비)	잔액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도 민 기탁금*	이 자 (법인세포함)	기타 수입 (위탁포함)	계		
계	46,732	28,000	545	3,014	7,970	20,871	2,260	109,392	26,760	82,632
20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20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20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20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20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20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20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20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2016	620	-	-	-	108	1,728	545	3,001	1,946	1,055
2017	620	-	-	-	154	1,805	34	2,613	1,827	786
2018	694	-	-	-	287	1,954	726	3,661	2,126	1,535
2019	657	-	-	-	398	2,090	502	3,647	2,795	852
2020	650	-	-	-	321	2,057	246	3,274	2,444	830
2021	686	-	-	-	211	1,260	189	2,346	1,145	1,201

<장학금 지원 실적 2021. 9월말 기준>

구 분	계	사업규모(명)									계	소요액(백만원)								
		'08~ '14	'15	'16	'17	'18	'19	'20	'21	'08~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4,206	6,752	1,096	1,099	1,094	1,131	1,189	1,347	498	18,871	9,607	1,417	1,426	1,341	1,413	1,511	1,563	593		
성 적	10,216	5,016	800	800	800	800	800	800	400	12,848	6,803	930	930	930	930	930	930	465		
수도권	765	180	90	90	90	90	90	90	45	1,530	360	180	180	180	180	180	180	90		
도 내 대 학	463	160	40	40	40	59	62	62	-	926	320	80	80	80	118	124	124	-		
로스쿨	193	105	21	21	-	10	20	16	-	882	557	105	105	-	25	50	40	-		
특 기	924	498	74	73	74	58	75	72	-	925	531	65	66	68	56	69	70	-		
희 망	491	249	20	30	36	41	44	45	26	454	234	19	29	30	40	40	39	23		
코 로 나 희 망	200	-	-	-	-	-	-	200	-	100	-	-	-	-	-	-	100	-		
곰두리	319	130	33	32	32	32	33	27	-	301	127	28	29	27	30	30	30	-		
특 별 지 정	159	67	18	13	12	15	16	13	5	144	94	10	7	6	8	10	7	2		
지 정	129	-	-	-	10	26	49	22	22	180	-	-	-	20	26	78	43	13		
총 사 복 량	195	195	-	-	-	-	-	-	-	110	110	-	-	-	-	-	-	-		
연 구	40	40	-	-	-	-	-	-	-	366	366	-	-	-	-	-	-	-		
꿈나무	95	95	-	-	-	-	-	-	-	86	86	-	-	-	-	-	-	-		
복 지	11	11	-	-	-	-	-	-	-	15	15	-	-	-	-	-	-	-		
HCN	6	6	-	-	-	-	-	-	-	4	4	-	-	-	-	-	-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충북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847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별 출연 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 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62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58,896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 인재양성 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71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3.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62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59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710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86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224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붙임 1

1] 충북연구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충북연구원 운영		출자·출연금	4,620,000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재)충북연구원 ○ 대표 : 정초시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인력 : 정원 43명(현원 43명) - 주요사업 :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출연금액 : 4,6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운영 : 4,270백만원 - 특별연구조직(공공투자분석센터): 350백만원 				
출자·출연필요성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북연구원 출연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검토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연구원은 충북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수탁과제 전입금 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와 인건비(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평가급(경영평가 5년연속 가등급 달성) 인상 등 세출 증가로 '21년 대비 1억 7천만원 증액 지원이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신성영	전영미	이경화	220-2123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3-220-1147 홈페이지 :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 2016.04.20. 충북연구원 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2		43		59				
입원 (21.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이OO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서OO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	신OO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	신OO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				
	"	이OO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				
	"	강OO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				
	"	정OO	충북연구원장		"				
	이사(선임직)	한OO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20. 10. 19. ~ '23. 10. 18.				
	"	주OO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 10. 19. ~ '23. 10. 18.				
	"	유OO	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		'20. 10. 19. ~ '23. 10. 18.				
	"	백OO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 10. 19. ~ '23. 10. 18.				
	"	고OO	대원대학교 총장		'20. 10. 19. ~ '23. 10. 18.				
	"	안OO	청풍로펌 변호사		'20. 10. 19. ~ '23. 10. 18.				
	"	김OO	충북대학교 총장		'20. 10. 19. ~ '23. 10. 18.				
	"	차OO	청주대학교 총장		'20. 10. 19. ~ '23. 10. 18.				
	"	차OO	충북경제포럼 회장		'20. 10. 19. ~ '23. 10. 18.				
	"	고OO	극동대학교 교수		'20. 10. 19. ~ '23. 10. 18.				
	감사(당연직)	신OO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감사(선임직)	김OO	공인회계사		'20. 10. 19. ~ '23. 10. 18.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기금) (단위:백만원)		2,171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5,589		
		일반 회계	예산액	5,706		5,452	5,645	부채	2,072
			지자체 지원액	4,400		4,400	4,450	자본	13,517
2020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272			11,986		-1,714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연 계획 >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출자·출연금	250,000천원
출자·출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표 : 김일재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 - 인 력 : 정원 104명(현원 77명) - 주요사업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액 : 250백만원('21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시·도 공동 출연 : 각 250백만원(세종시 150백만원)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수행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기금에 총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17개 시·도 공동 출연 ○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역할 수행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광역 시·도 지방분권 정책지원 등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금년 수준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신성영	전영미	이경화	220-2123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전화번호 : 033-769-9913			
					홈페이지 : www.krila.re.kr			
주요연혁	- 1984.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7		77			10		
임원 (19.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20.12.17 ~ 23.12.16		
	이사(당연직)	21명	행안부(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광역시·도(17) : 기획관리(조정)실장			재임기간		
	이사(선임직)	강OO	국토연구원 원장			'20. 3. 4. ~ '22. 3. 3.		
	"	김OO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20. 3. 4. ~ '22. 3. 3.		
	"	김OO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 3. 4. ~ '22. 3. 3.		
	"	김OO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 3. 4. ~ '22. 3. 3.		
	"	손OO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 3. 4. ~ '22. 3. 3.		
	"	이OO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 3. 4. ~ '22. 3. 3.		
	"	이OO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 3. 4. ~ '22. 3. 3.		
	"	권OO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21. 2. 23. ~ '23. 2. 22.		
주요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 -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6,525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66,215
	일반 회계	예산액	10,284	11,085	11,243		부채	8,880
		지자체 지원액	4,150	4,150	4,150		자본	57,335
2020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903			19,087		2,816	

관계법령 발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출자·출연금	60,000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 대표 : 최치국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 인력 : 62명(이사장1, 상임이사1, 연구직 34, 일반직 26)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자문, 사업타당성, 정책연구·교육 등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 출연금액 : 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50%) 감안 전국 시도별 배분 * 17개 시도 출연금액 : 1,008백만원 				
출자·출연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사업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을 강화하고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이사 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함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수인	우은자	박은경	220-224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전화번호 : 02-3489-2700			
					홈페이지:www.erc.re.kr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 1994.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0. 1. 재)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 2002.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 			기관 형태 (출자, 출연)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21.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5명		62명		3명			
임원 ('21. 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최OO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 4. 20. ~ '23. 4. 19.			
	상임이사	성OO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20. 2. 5. ~ '23. 2. 4.			
	당연직이사 (비상임)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1) : 지방경제지원관 - 광역시·도(4) : 기획관리(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직위 재임기간 - 광역시도 윤번제 (2년임기) ('21. 1. 1. ~ '22. 12. 31.) 			
	위촉직이사 (비상임)	허OO	인천연구원 부원장		'20. 6. 12. ~ '23. 6. 11.			
		김OO	대한교통학회 회장		'20. 6. 12. ~ '23. 6. 11.			
		제O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20. 6. 12. ~ '23. 6. 11.			
		여OO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20. 6. 12. ~ '23. 6. 11.			
감사(비상임)	박OO	성도이현회계법인 대표이사		'20. 6. 12. ~ '23. 6. 11.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3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11,9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20,886
	일반 회계	예산액	15,101	15,359	18,513		부채	2,559
		지자체 지원액	1,014	1,014	1,014		자본	18,327
2020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583				13,054		529	

참 고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8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0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40, 공기업 수 평균 : 24.7(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1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08	△6	9.594	-	510	370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7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60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4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23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394	1	24	28	3	36
충청북도	60	60	-	0.517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87	2	30	32	3	36
전라북도	54	54	-	0.37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38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489	1	24	38	4	42
경상남도	72	72	-	0.70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가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출자·출연금	158,896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표 : 배진환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인력 : 80명(현원 67, 파견공무원 등 13) -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출연금액 : 158,896천원('21년대비 19,344천원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동사업임 		
출자·출연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 반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홍순석	배덕기	조열희	220-275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02-2071-2789			
					홈페이지: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0명		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		13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원 (2021년 8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백OO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 12. 22. ~ '23. 12. 21.			
	부이사장	이OO	서울 도봉구청장		'21. 2. 28. ~ '22. 2. 27.			
	이사	배OO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	이OO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			
	"	김OO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1. 2. 28. ~ '22. 2. 27.			
	"	임OO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		'21. 2. 28. ~ '22. 2. 27.			
	"	신OO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21. 2. 28. ~ '22. 2. 27.			
	"	박OO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21. 2. 28. ~ '22. 2. 27.			
	"	김OO	서울 은평구청장		'21. 2. 28. ~ '22. 2. 27.			
	"	이OO	경기 여주시장		'21. 2. 28. ~ '22. 2. 27.			
	"	백OO	경상북도 칠곡군수		'21. 2. 28. ~ '22. 2. 27.			
	"	유OO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1. 2. 28. ~ '22. 2. 27.			
	감사	하OO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	유OO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 2. 28. ~ '22. 2. 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9,680 (자산 총액)
	일반 회계	예산액	12,897	10,855	11,928		부채	12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843	8,972	10,821		자본	19,553 (자본 총액)
2020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504			9,816		2,688	

관계법령 발취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 충북인재양성재단

< 출연 계획 >

사업명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출자·출연비	710,000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충북인재양성재단 ○ 이사장 : 이시종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인력 : 6명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인재양성사업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사업내용 :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수도권장학금, 도내대학장학금 ○ 출연금액 : 7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 486,000천원(인건비 320,000천원, 경상비 166,000천원) - 수도권장학금 : 180,000천원(2,000천원 × 90명) - 도내대학장학금 : 44,000천원(2,000천원 × 20명) 		
출자·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재단 운영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시·군 출연금 중단('16년)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재단운영비 부족분 계상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인재 재능 나눔, 미래지도자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높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급(연 1,136여명, 1,439백만원) - 인재양성사업(대학인재 재능나눔 등 4개 사업. 연 700여명, 110백만원) ※ 장학기금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도 50억원, 시·군 35억원을 출연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16년부터 시·군 출연 중단('21. 9. 24. 현재 적립액 : 825억 28백만원) ⇒ 이자율 하락과 시·군 출연 중단으로 현재의 장학사업 유지를 위해서 재단 운영비 출연 불가피 		

주관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서동경	백준화	송혜란	220-298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043-224-0221 홈페이지:www.chrdf.or.kr			
주요연혁	- '08. 2월 설립등기 - '21. 9월 재단기금 825억 돌파(잔액기준)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명		6명		1명			
임원 ('21. 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당연직)	이OO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김OO	충청북도교육감		"			
	"	한OO	청주시장		"			
	"	조OO	충주시장		"			
	"	이OO	제천시장		"			
	"	정OO	보은군수		"			
	"	김OO	옥천군수		"			
	"	박OO	영동군수		"			
	"	홍OO	증평군수		"			
	"	송OO	진천군수		"			
	"	이OO	괴산군수		"			
	"	조OO	음성군수		"			
	"	류OO	단양군수		"			
	"	신OO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	오OO	충청북도 행정국장		"			
	"	신OO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			
	"	박OO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			
	이사(선임직)	임OO	충북여약사회 회장		'20. 5. 14. ~ '22. 5. 13.			
	"	한OO	(주)테스트테크 대표이사		'20. 5. 14. ~ '22. 5. 13.			
	"	강OO	신한은행충북본부장		'20. 5. 14. ~ '22. 5. 13.			
	"	염OO	충북농협지역본부장		'20. 5. 14. ~ '22. 5. 13.			
	"	오OO	대신정기화물회장		'20. 4. 19. ~ '22. 4. 18.			
	"	이OO	충북대학교 교수		'20. 4. 3. ~ '22. 4. 2.			
	"	이OO	(주)유진테크놀로지 대표		'21. 5. 27. ~ '22. 4. 18.			
	"	조OO	청주병원 원장		'21. 3. 8. ~ '23. 3. 7.			
	"	이OO	前 대성중학교 교장		'21. 3. 8. ~ '23. 3. 7.			
	"	류OO	前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21. 4. 29. ~ '23. 4. 28.			
감사(당연직)	서OO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재임기간				
감사(선임직)	변OO	한빛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 9. 6. ~ '22. 9. 5.				
주요기능	우수 인재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자본금 (단위:백만원)		78,0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81,880
	일반 회계	예산액	7,564	7,241	5,929		부채	103
		지자체 지원액	657	650	686	자본	81,776	
2020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129			2,176		953	

관계법령 발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